

| | | | |
|-----|-----|-------|--|
| 작성자 | 승인자 | 작성년월일 | |
| | | | |

호주 뉴캐슬항 그린수소
암모니아 개발사업

과업지시서

2023. 09.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과업지시서..... | 1 |
| 1. 개요..... | 1 |
| 2. 과업기간..... | 3 |
| 3. 과업내용..... | 3 |
| 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 | 10 |
| 5. 과업수행 방법..... | 14 |
| 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 | 15 |
| 7. 보안대책..... | 16 |
| II. 예정공정표..... | 18 |

1. 개요

□ 과업명 : 호주 뉴캐슬항 그린 수소·암모니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

□ 과업배경

- 정부는 2050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전환분야(발전)에 무탄소전원(청정 수소·암모니아 연료 혼소) 확대를 추진 중임에 따라, CHPS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'24년도에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 예정임.
- 본 사업 제안자는 그린 수소·암모니아의 직접 개발/투자/조달로 청정연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가격을 통제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탈탄소 정책에 기여하고자 해외 각지에서 청정 수소·암모니아 개발사업을 검토 및 개발 추진 중임.
- 이 중, “호주 뉴캐슬항 그린 수소·암모니아 개발사업”은 아래와 같이 생산비용 절감 가능 요건, 국가환경, 지원정책, 생산시기, 사업추진 여건, 위치 등 사업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본 사업개발 추진을 결정하였으며, 하기 요소들의 철저한 분석·수행이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임.
 - 1) 호주의 풍부한 재생E 보유현황 및 확대 정책에 따른 수소·암모니아 생산비용 절감 가능 환경
 - 2) 호주 정부의 수소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및 수혜 가능성
 - 3) 대규모 물량의 그린 암모니아 '28년도 생산 가능 일정
 - 4) 수출용 항구 포함 기타 공용시설 등의 인프라 확보
 - ※ 발주처(PoN)¹⁾에서 공용인프라 구축
 - 5) 타국 대비 동아시아지역(한국,일본)으로의 짧은 운송거리

1) PoN(Port of Newcastle, 뉴캐슬 항만회사) : 호주 동남부 최대 항구인 뉴캐슬 항만 운영회사로, '14년 'Port of Newcastle Investments' 컨소시엄이 New South Wales(NSW) 주정부로부터 뉴캐슬항 운영권(98년간) 매입, 항만 운영 중

□ 과업목적

- 사업위치는 호주 New South Wales주 뉴캐슬항구의 청정에너지 개발구역(Clean Energy Precinct, CEP) 내 위치하며, 연간 그린 암모니아 60만톤 생산 규모 플랜트의 개발, 투자, 금융, 건설 및 운영(25~30년) 사업임.

- '23.7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PoN과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, 타당성조사 완료를 조건으로 '24.3월 PoN과 부지 임대계약을 포함한 사업개발 협력 계약*을 체결 예정임

* 사업개발 협력 계약서(Agreement for Lease, AfL)

- 체결 당사자/체결일정 : 본 사업 제안자 컨소시엄 ↔ PoN / '24.3.31
- 주요내용
 - PoN의 전력, 용수, 암모니아 저장설비 등 부대시설 공급 의무
 - K-컨소시엄의 수소 생산·저장, 암모니아 생산 의무
 - 부지 임대차 주요 조건
 - 사업개발 비용 및 비용 분담 원칙 등

- 이에 따라, 그린 수소·암모니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(전세계 청정 수소·암모니아 시장 동향, 호주 현지 사업 환경과 전력산업 일반 및 IPP사례 등을 포함한 신재생 전력시장, 현지 청정인증 조건·현황), 재무적 타당성 검토, 법률 검토, 기술 검토를 수행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진단하고, 그 결과를 발주처(PoN)와의 사업개발 협력 계약 시와 금융 기관과 PF(Project Finance)를 비롯한 각종 계약 협상 등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0일

3. 과업내용

1) 수소 암모니아 시장 분석

□ 수소·암모니아 수요 전망

- 국가별(전세계/주요국/호주), 섹터별(전력/산업/수송 등)

□ 수소·암모니아 생산가격(LCOH/LCOA) 전망 (전세계/주요국/호주)

- 그린수소 : 중장기('23 ~ '50) 국가별 생산가격 전망
 - * 예상 Capex : 주요 자재별(재생e, 수전해, 암모니아 합성설비 등) 예상 가격 Breakdown 포함
 - * 예상 Opex : 세부 역무 Breakdown 포함
- 블루수소 : 중장기('23 ~ '50)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가격 전망

□ 수소·암모니아 운송

- 운송기술 개발 현황 : 암모니아 추진선, 수소 액화수송 기술
- 주요생산국(호주, 중동, 북미 등) → 한국 예상 운송비용 전망

□ 수소·암모니아 정책 분석 (주요국/호주)

- 주요국 정책 동향 (미국, 일본, EU 등)
- 호주 수소정책 분석
 - 연방정부 Headstart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 분석

2) 재생e 조달 전략 수립 [현지 전문기관 활용]

□ New South Wales 주 전력시장 분석

- 전력산업(재생e 포함) 현황
- 전력 가격 분석 : PPA 가격 및 시장(Merchant) 가격 동향 및 예상
 - LGC(Large Scale Generation Certificate)를 포함한 가격 분석
- 송전제약(curtailement), 계통 용량 분석
 - NSW주 전력요금 지원(Concession) 프로그램* 분석
 - * Concession 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, 도매시장 전력요금 구성에 대한 분석 필요

□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e 공급방안 도출

- 다수의 재생e PPA 계약, Retailer 활용, Merchant 시장 전력 등을 통한 전력 공급방안 분석 및 전략 수립
 - 공급모델 수립, 장단점 및 리스크 분석

■ 재생e 필요 용량

- 재생e 설비 용량 : 총 900MW
(수전해 설비 : 750MW, 암모니아 합성 : 125MW, 기타 25MW)
- 전력량 : 6,900GWh/y (이용률 : 87.5%)
- 예상 생산시기 : '28년~'29년

- 재생e 프로젝트 리스트 및 개발현황 조사
 - NSW주 태양광 및 풍력사업 중 PPA 미체결 사업
 - 사업 상세정보 제공(위치, 사업주, 개발단계, 예상 COD 등)
- 재생e 공급가능 Retailer 리스트 조사
- 재생e 예상 가격 도출
 - NSW주 PPA 가격, 도·소매 전력가격, 시장 가격 등을 분석하여 각 공급모델 별 예상 전력가격 도출

3) 기술·환경·인허가 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[현지 전문기관 활용]

□ 건설 여건 분석

- 뉴캐슬항 청정에너지구역(CEP) 내 주요 부지 할당 및 수소·암모니아 생산부지 내역 검토
- 뉴캐슬 항만회사(PoN)의 CEP 개발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등 관련 계획 및 조사 자료 검토
- PoN이 제공하는 공용설비 및 설비별 접속지점(PoI) 내역 검토
- 사업 입지 분석
 - 사업부지의 위치, 현황, 특성 등 제반여건 분석
 - 현장 및 주변지역 지반조사 관련 자료 검토 및 위험요소 분석
 - 사업부지 폐기물 매립, 복원 현황 및 위험요소 분석

□ 사업 여건 분석

-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기술 동향
 - 수전해 설비 기술개발 동향
 - 암모니아 합성설비 기술개발 동향
- 사업부지 환경관련 분야
 - 사업 부지 주요 환경요인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분석
 - 건설/운영 기간 환경 규제기준 검토 (대기, 수질, 소음, 폐기물 등)
- 기술분야 사업위험 분석 (Risk Analysis)
 - 사업개발 관련 위험요소 검토 (Risk Register)
 - 위험요소 분석 및 리스크 조치계획(Risk Management Plan) 수립

□ 개념 설계

- 설계 개념
 - 수소/암모니아 생산 설비 구성
 - 주요 설비 용량 선정

- 설계 기준
 - 플랜트 설계 적용 규제, 법령 및 표준 분석
 - ※ 플랜트 설비 적용 및 설계는 현지국의 규격 및 표준 (Codes & Standards)을 적용해야 함
 - 주요 설계 기준 및 설비별 고려 항목 검토
- 수전해 및 암모니아 생산 설비 (냉각설비 및 보조설비 포함)
- 접속설비
 - 전력, 용수, 폐수 등 유틸리티
 - 수소 저장시설 및 하역설비
 - 암모니아 공용 저장시설(PoN제공) 접속설비
 - 각 유틸리티 별 소요량 및 세부 내역서 산출 (전력, 용수, 폐수 등)
- 기타 설비
- 기기 및 건물 배치 계획 및 소요면적

□ 설비 최적화

- 재생에너지 시간별 단가 및 소요 공사비(CAPEX) 등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설비 구성 최적화 시행
- 상기 설비 최적화에 부합하는 플랜트 가동율(Availability) 및 이용율(Capacity Factor 또는 Utilization Factor) 산출
- 최적화 결과에 따른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량(일일, 월간, 연간) 산출

□ 건설 공정 계획

- 주기기 및 Long-lead Item 조달 전략
- EPC 수행구조 및 추진 전략
- 인허가 및 설계, 공정별 건설 및 시운전 등 사업 추진 일정

□ 설비 운영 계획

- 플랜트 운영 인력 및 소요 자원 검토
- 플랜트 운영 및 정비 전략 제시

□ 건설 및 운영 소요 비용 산출

- 공사비(CAPEX) 산출 (AACE Class 4) 및 세부 내역서 작성
- 운영비(OPEX) 산출 (AACE Class 4) 및 세부 내역서 작성

4) 재무 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□ 해외 그린 수소·암모니아 프로젝트 Financing 현황 및 규모 분석

- 참여 금융기관 및 금융조달 내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
- 적용가능한 금융 구조 및 전략 등 로드맵 제시

□ 재무적 타당성 분석

- 초기 재무모델 및 최종 재무모델(타당성조사 결과 반영) 작성
 - Excel File 양식(영문) 작성
 - 추정 현금흐름표, 추정 손익계산서, 재무성 분석
 - 사업 주요 가정 및 법인세, 부가세 등 주요 세제 반영
 - Debt 인출 및 원리금 상환 일정
 - 주요 Factor 민감도/시나리오 분석(공사비 등 주요 사업비 변동, 전력 구매단가, 암모니아 판매단가, 암모니아 판매기간, 설비 가동시간, 차입금리 및 Fee 등 금융 조건, 운영비, 환율, 물가상승률 등)
-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
 - 수익성 지표 분석(NPV, IRR, 회수기간 등)
 - 안정성 지표 분석(DSCR,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등)
 - SPC 추정재무제표 작성

□ 재원조달계획 수립

- 사업에 적합한 자본·부채 규모 분석을 통한 최적 재원구조 제시
- ECA 등 정책금융 및 상업은행 조달 가능성 및 조달방안 검토
- 이자율, 환율변동 및 환전 리스크 헷지 방안 검토
- Mini-Perm 활용 후 리파이낸싱 등 적용 가능한 재원조달 구조 제시
- 해당국 내 IPP 사업 또는 수소·암모니아 사업 Project Financing 사례

□ 세무회계 검토

- Project SPC 설립 관련 세무 및 세제 혜택, 부담금 검토
- 건설/운영 단계별 관련 세무 검토
- 외국인 투자사업 시 Tax Incentive 제도 검토
- 외국환 거래 관련 절차 및 제한 검토(태환 포함)
- 투자금 회수 방안 검토
- 사업 수행 시 업무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세무 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

□ 투자제안서(IM, Information Memorandum) 작성 (영문)

- 사업개요 : 위치, 시설, 공사 및 운영기간, 총 사업비 등
- 사업구조(투자구조) 및 전체 매출 구조
- 비용 구조 : O&M 비용, SPC 비용, 기타 비용 등
- 자금 조달(Financing) 구조
- 기타 필요사항

□ 기타 재무 타당성 관련 사항 검토

5) 법률분야 검토

□ SPC 설립 절차 및 조건

- 법인설립절차 및 소요기간

□ 인허가 조사

- 사업개발(부지확보, 건설, 운영 등)을 위한 현지 관련 법규 및 인허가 필요항목 검토
- 인허가 항목별 주요내역 검토 및 취득 절차 분석
- 운영 규제 분야
 - 현지 산업안전 보건 규제 등 주요 위험 시설물 해당여부 검토 및 사업영향 분석
 - 생산물(수소, 암모니아)의 위험물질 취급에 적용되는 규제, 법령 및 표준 조사
- 호주 및 NSW州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 검토

□ 부지이용 관련 법적 문제 발생 가능여부 검토

- 부지소유관계 등 확인
- PoN과 임대계약 체결 시 법적 유의사항

6) 사업주 수행역무

□ [시 장]

- 자체 예비F/S 조사내용 등 기존자료 공유 및 초기자료 분석 지원
- 호주 수소정책 프로그램 분석 지원 및 분석결과 검토
 - 도매시장 전력요금 구성 분석 및 전력 공급방안 수립 전략 검토

□ [기 술]

- 인허가, 설계, 건설 및 시운전 등의 사업 추진계획·일정 검토
- 사업 부지 내 수소·암모니아 설비 및 공용유틸리티 구성·배치 등 검토
- 적용기술·설비(설비회사) 후보 탐색 및 적정여부 검토
- 사업에 따른 주요 환경리스크,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 검토

□ [재 무]

- 재무모델 Input data 제공 및 작성 지원
- 최적 재원구조 계획 수립 지원 및 적정성 검토
- 투자제안서(IM, Information Memorandum) 공동 작성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 -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 대비 업무수행역량이 동등 이상인 자로 한정하며,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최종 및 중간 보고서, 발표자료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, 각 언어별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.
- 최종보고서 상 기술분야 보고서 작성 시 일반적인 PF 조달에서 요구되는 Technical Due Diligence Report 수준을 충족해야 함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 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

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<사업제안자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
- <사업제안자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.

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 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(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
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(수정 가능한 형태)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

보고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(요약본)를 전자파일(수정 가능한 형태)로 함께 제출 하여야 함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 또는 협상으로 인해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 등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(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.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

- 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 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 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 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 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분만 생산해야 함
 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 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 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 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. 예정공정표

| 항목 |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4개월 | 5개월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|
| 1. 과업환경 조사 | | ■ | | | | | |
| 2. 시장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| | | ■ | | | | |
| 3.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| | ■ | | | | | |
| 4.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| | | | ■ | | | |
| 5. 법률 검토 | | | ■ | | | | |
| 6.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| | | | ■ | | | |
| 7. 성과품 작성 | | ■ | | ■ | | ■ | |
| 보고회 | | 착수 보고 | | 중간 보고 | | 최종 보고 | |
| 과업진도율 | 당기 | 15 | 20 | 25 | 25 | 15 | |
| | 누적 | 15 | 35 | 60 | 85 | 100 | |